
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| <b>입학홍보협력처운영위원회규정</b> | 규정번호 | 3-8-42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자 | 2024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자 |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차수 |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부서 | 입학홍보협력처   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입학홍보협력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다.

1. 입학홍보협력처 운영 계획 및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학 입학홍보 자문에 관한 사항
3. 대학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4. 대학홍보성과분석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5. 대학홍보물, 대학 UI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하기관(교교연계협력센터, 진로체험센터) 운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입학홍보협력처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산하기관 센터장, 입학팀장, 홍보협력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7조(조사, 연구의 의뢰)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외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소요경비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,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